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주민자치사업단에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9년 3월 11일

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### 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임용등급	인원	근무예정 부서	담당직무 내용
주민자치	시간선택제 임기제 "마급"	1명	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(자치행정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구, 동 민관협력체계 구축</li> <li>▶ 현장소통</li> <li>▶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</li> <li>▶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</li> <li>▶ 현장기록 및 보관 등</li> </ul>

○ 채용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 (주 35시간)

※ 주민자치회 사업을 확대(2020년 이후)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

### 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
### 3. 응시 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- 지역 · 연령 ·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채용직급	응시자격요건
시간선택제 임기제	마급	1.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◆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: 주민자치, 마을활동, 사회적경제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분야

◆ 근무경력 :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협동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주민자치, 마을공동체 활동 경력

※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※ 유의사항

- 1)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
- 2)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,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- 3)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

## 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○ 근무조건

- 근무시간 : 주 5일 35시간 (1일 7시간 근무)
-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
○ 보수 및 수당

- 연봉

임용등급	연봉액
시간선택제임기제 “마급”	24,000천원

- 수당 등 연봉의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 ※ 시간외 수당,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
## 5. 선발일정 및 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9. 3. 22.(금) ~ 3. 26.(화) <3일간 9:00~18:00>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(대리접수 가능, 팩스·인터넷 접수 불가)  
※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- 접수처 :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(본관 5층)  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
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
※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장 소
서류전형	2019. 3. 29.(금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19. 4. 1.(월)	서대문구청 홈페이지
면접시험	2019. 4. 4.(목)	추후 개별 안내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19. 4. 5.(금)	서대문구청 홈페이지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 (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)
- 합격자 발표 :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

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3항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  - ※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동점자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결정함.
  - ※ 단,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
  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. 제출서류

### ① 응시원서(첨부1) 1부

- 응시수수료 : 5,000원(마감)

※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접수처(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)에 제출

※ 수입증지 판매처 :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인증

### ② 이력서(첨부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### ③ 자기소개서(첨부3) 1부

### ④ 직무수행계획서(첨부4) 1부

### ⑤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첨부5) 1부

###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6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###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###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근무처별)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
- 해당기관(회사)의 관인(법인 인장)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첨부7)'추가 제출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
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또는 서류전형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([www.sdm.go.kr](http://www.sdm.go.kr)) '고시공고' 와 '채용정보'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 담당(이경희 ☎ 02-330-1040)